

● 제298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검 토 보 고 서

2020. 12. 2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】

I. 규칙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춘례 의원(찬성자 이은주 의원 외 9명)
- 나. 제안일 : 2020. 10. 16.
- 다. 회부일 : 2020. 10. 26.
- 라. 의안번호 : 1958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회의규칙 제49조은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해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 이미 시의회 홈페이지 내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제공하고 있어 시디롬 배부 사업의 실효성이 사라졌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(안 제49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임시회와 정례회 등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디롬을 제작해 의원에게 배부해오던 방식을 전자회의록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됐음.

2 회의록 배부 방법 조정(안 제49조제1항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2조¹⁾제4항에 따르면,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임.
-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49조제1항에 회의록은 시디롬으로 제작해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해 의원에게 직접 배부해 오고 있으나, 전자회의록을 비롯한 영상회의록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·배부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임.
- 이에 본 개정안은 의원에게 배부하는 회의록 제작·배부 방식을 기존 시디롬에서 전자회의록의 형태로 같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

1) 제72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, 시디롬 제작 예산(‘20년 기준 약 110만원)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<u>회의록 시디롬</u> 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<u>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</u> _____. _____ _____ _____ _____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참고로, 광주광역시의회(회의규칙)와 전라북도의회(회의규칙)에서도 본 개정안과 같이 회의록 배부는 전자회의록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국회를 비롯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.²⁾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매 회기 종료 후 의원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해 배부하던 방식에서 전자회의록으로 같음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 관련 예산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.

2) 국회(국회법) 및 광역의회의 회의록 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(회의규칙)은 붙임 참조

1. 국회법

제118조(회의록의 배부·배포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. 다만,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(轉載)·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2.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

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 시디롬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

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·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·절차·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3.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,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,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4.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5.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46조(회의록의 배부 등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

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6.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며, 회의록의 배부방법은 매 회기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전자회의록의 방식으로 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7.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

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,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,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·절차·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8.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54조 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해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9.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

제5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, 전재·복제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·복사하게 하거나 전재·복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10. 경기도의회 회의규칙

제62조(회의록의 배부와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나 그 소속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이나 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이를 타인에게 열람이나 전제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11. 강원도의회 회의규칙

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·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12.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

제4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나 의회운영위원회와

협의하여 이를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이나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이나 전재(轉載)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은 일반에게 배포할 수 있다.

13.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

제47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,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,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14.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

제50조(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(홈페이지 게재로 같음할 수 있다)한다.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·복사하게 하거나 전재·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.

15.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

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 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16.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

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 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17.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

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

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18.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

제57조(회의록의 배부와 공개) ① 회의록은 도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

② 도의회 의장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도의회의원이 제2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의회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도의회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(轉載)·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 또는 도의회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
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